

##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1) 상정
-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2)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류재명)

####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인·허가 전담기구를 승인해 줌에 따라 인·허가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·허가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고, 2단계 2차연도 기구조정으로 폐지 또는 명칭변경되는 기구를 조정하며
- 농산지원사업소, 청소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## 주요골자

- 행정기구

구 분	현 행	개 정 후	증·감
계	5국 2실 11소 1사무국 3구 47과 248담당	5국 2실 11소 1사무국 3구 50과 252담당	3과 4담당 증가
본 청	5국 2실 21과 98담당	5국 2실 21과 104담당	6담당 증가
직 속 기 관	3소 11담당	3소 11담당	
사 업 소	8소 5과 45담당	8소 5과 46담당	1담당 증가
구 청	3구 21과 92담당	3구 24과 89담당	3과 증가 3담당 감소
동	35개 동	35개 동	
의 회	1사무국 2담당	1사무국 2담당	

○ 조정내역

구 분	통·폐합	폐 지	신 설	명칭변경
실·과·소 (5급)	• 부과1과 + 부과2과 → 부과과	• 차량등록사업소	• 민원허가과 • 교통지도사업소 • 3개 구청 주민자치과	• 시민복지과 → 사회복지과 • 3개 구청 건축과 → 민원허가과
담당(6급)	• 민원 + 호적 → 민원·호적	1 • 누수탐사  6 • 3개 구청 교통행정 • 3개 구청 민원	6 • 건설·건축허가 • 공업허가 • 환경·위생허가 • 교통허가 • 기초생활 • 주차정책  2 • 주차단속 1 • 과태료관리  3 • 3개 구청자치행정	• 3개 구청 단속 → 일반민원허가

○ 사업소 소재지 변경

부 서 명	당 초	변 경
농산지원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72-1번지
청 소 사 업 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과1과와 부과2과 2개 과를 합쳐 부과과 1개 과로 조정하는데 5급 과장 1명이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할 수 있으며, 업무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?	○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경력이 있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이며 업무가 세목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팀장이 관장하면 어느 면에서는 민원허가과보다 수월하다고 생각됨
○ 과의 팀장은 보통 몇 개가 적당한가?	○ 한 개 과에 7개, 8개가 적당한 것으로 봄
○ 민원허가과 신설 등 이번 행정기구 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는 것인가? 그리고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?	○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나중에 승인받아야 하며 금년 연말까지 해야 함
○ 지침대로 개편하지 않을 시는 어떤 조치가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?	○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으며 기타 행정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무위임조례 정비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동의 업무가 구 및 시로 이관되고 동 인원도 줄여야 하는데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음
○ 민원허가과 신설시 공무원이 증가되는가?	○ 총 정원에서 상계조정되므로 증원은 없음
○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를 통합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?	○ 부과과는 직원이 58명인데 비해 98명으로 통솔하기가 너무 어려우며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음
○ 실업대책총괄과가 금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이므로 그때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을텐데	○ 실업대책총괄과 설치기한이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

이번 개편은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하여 12월에 같이 개편하면 어떤가?

- 체육청소년과는 복지환경국에 소속되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국에 속한 이유는?

없음. 내년으로 연장되는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임

- 현재 행정지원국은 5개 과이고 복지환경국은 사업소 포함하여 7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으며 체육업무는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도 문제는 없으나 청소년 업무는 복지분야이지만 업무가 단순하므로 체육분야에 흡수하였기 때문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구조조정의 일환 및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함께 맞물려 개편하는 것이며, 또 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급회 개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봄

나. 반대토론

- 한시기구인 "실업대책총괄과"가 금년 12월말까지 설치기한이므로 이번에 개편하면 4개월 여만에 다시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더 검토하여 12월에 같이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함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부과1과와 부과2과의 2개 과를 합쳐 부과과 1개 과로 조정하는 것은 한 명의 과장이 6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관리 통솔하기가 벅차고 업무를 총괄하기가 곤란함
- 따라서 부과1과와 부과2과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64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인·허가 전담기구를 승인해 줌에 따라 인·허가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·허가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고, 2단계 2차연도 기구조정으로 폐지 또는 명칭변경되는 기구를 조정하며
- 농산지원사업소, 청소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행정기구

구 분	현 행	개 정 후	증·감
계	5국 2실 11소 1사무국 3구 47과 248담당	5국 2실 11소 1사무국 3구 50과 252담당	3과 4담당 증가
본 청	5국 2실 21과 98담당	5국 2실 21과 104담당	6담당 증가
직 속 기 관	3소 11담당	3소 11담당	
사 업 소	8소 5과 45담당	8소 5과 46담당	1담당 증가
구 청	3구 21과 92담당	3구 24과 89담당	3과 증가 3담당 감소
동	35개 동	35개 동	
의 회	1사무국 2담당	1사무국 2담당	

- 조정내역

구 분	통·폐합	폐 지	신 설	명칭변경
실·과·소 (5급)	• 부과1과 + 부과2과 → 부과과	• 차량등록사업소	• 민원허가과 • 교통지도사업소 • 3개 구청 주민자치과	• 시민복지과 → 사회복지과 • 3개 구청 건축과 → 민원허가과

담당(6급)	• 민원 + 호적 → 민원·호적	1	6	• 3개 구청 단속 → 일반민원허가
		• 누수탐사	• 건설·건축허가 • 공업허가 • 환경·위생허가 • 교통허가 • 기초생활 • 주차정책	
		6	2	
		• 3개 구청 교통행정 • 3개 구청 민원	• 주차단속 1 • 과태료관리	
			3	
			• 3개 구청 자치행정	

○ 사업소 소재지 변경

부 서 명	당 초	변 경
농산지원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72-1번지
청 소 사 업 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차량등록사업소”를 “교통지도사업소”로 한다.

제4조 중 별표1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 소재지란 중 “중동 1156”을 “춘의동 372-1”로 하고 부천시청소사업소 소재지란 중 “원미구 중동 1156”을 “오정구 대장동 608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정보관리과” 다음에 “민원허가과”를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민원행정 및 민원허가처리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 중 “부과1과, 부과2과”를 “부과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시민복지과”를 “사회복지과”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민생활 보호대책, 장애인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교통지도사업소

- 가.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
- 나. 차량운행질서 및 안전관리 지도·단속
- 다.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
- 라. 불법주·정차지도단속 및 위반에 대한 조치
- 마.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		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	
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생략)		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현행과 같음)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
2. 사업소 : 맑은물푸른숲사업소, 농산지원사업소, 청소사업소, 시립도서관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<u>차량등록사업소</u> , 하수정화사업소		2. .... ..... ..... <u>교통지도사업소</u> .....	
제4조(소재지) (생략)		제4조(소재지) (현행과 같음)	
[별표1]		[별표1]	
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	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
기관명	소 재 지	기관명	소 재 지
부천시농산 지원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<u>중동 1156번지</u>	부천시농산 지원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<u>춘의동 372-1번지</u>
부 천 시 청소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<u>중동 1156번지</u>	부 천 시 청소사업소	부천시 <u>오정구 대장동 608번지</u>

제7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, 회계과, 체육청소년과, 정보관리과를 둔다.

②(생략)

1~4 (생략)

(신설)

제8조(기획세무국에 두는 과) ①기획세무국에 기획예산과, 세정과, 부과1과, 부과2과, 징수과를 둔다.

제10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복지환경국에 신민복지과, 여성복지과, 문화예술과, 환경위생과를 둔다.

②(생략)

1. 서민생활보호대책·장애인·민원행정처리에 관한 사항

2~4 (생략)

제17조(소관사무) (생략)

1~6 (생략)

7. 차량등록사업소

가.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·검사

나.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장 설정·말소

다. 이륜차 등록 및 지도단속

라.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

마. 기타 차량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

8. (생략)

제7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.....  
.....정보관리과, 민원허가과.....

②(현행과 같음)

1~4 (현행과 같음)

5. 민원행정 및 민원허가처리에 관한 사항

제8조(기획세무국에 두는 과) ①.....  
.....부과과.....

제10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.....신민복지과.....  
.....

1. 서민생활보호대책·장애인에 관한 사항

2~4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

1~6 (현행과 같음)

7. 교통지도사업소

가.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

나. 차량운행질서 및 안전관리 지도·단속

다.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

라. 불법주·정차 지도단속 및 위반에 대한 조치

마. 자동차의 압류 등록 해제

8. (현행과 같음)